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

(會員券 賣買契約書)

회원성명		회원구분	개인 □ 법인 □
회원번호		평 형	45평 □ 20평 □

상기 골프회원권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조 (대금지급 방법)

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
대금총액 : 일금 원정(₩)으로 하고
계 약 금 : 일금 원정(₩)을 계약체결 당시에 지급하며,
잔 금 : 일금 원정(₩)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.

제 2조 (명의개서 절차)

제 1항 : 양도인은 잔금 수령시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변경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하며, 명의개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2항 : 양도, 양수에 따른 명의개서료는 양수인이 부담한다.

제 3조 (양도, 양수인의 책임한계)

제 1항 : 양도, 양수시 압류 등과 같은 문제와 이로 인한 계약파기 등 제반문제에 관한 책임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즉, 명의개서일 이전의 원인제공 및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양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, 이후에 대하여는 양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.

제 2항 : 양도서류의 미비, 회원권의 압류 등 하자 및 (주)블루원 으로부터 양도, 양수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양도절차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, 이때 양수인의 환불요구에 대하여 양도인은 지체 없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양수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
제 3항 : 계약 후 양도인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 계약파기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양수인은 원금만 환불 받을 수 있다.

제 4항 : 본 거래가격은 양도, 양수인이 절충하고, 동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차후 거래가격이나 (주)블루원으로부터반환 받게 되는 예탁금의 금액에 관하여 쌍방에 대하여나 (주)블루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
제 4조 (기 타)

제 1항 : 회원권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체납액 일체는 양도인의 부담이다.

제 2항 :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도회원권 업계의 일반관행을 따른다.

년 월 일

양 도 인 (讓渡人)		양 수 인 (讓受人)	
주 소		주 소	
주민(사업자) 등록번호		주민(사업자) 등록번호	
법 인 명		법 인 명	
성명(대표자)	印	성명(대표자)	印

(주) 블 루 원